

더 큰 범죄로 번지는 교제폭력...법적·사회적 개입 시급



파멸 부르는 데이트 폭력

<하> 법적 처벌 범위 확대해야

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달 전남자친구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렸지만 가해자인 남친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해 경찰 대질조사를 해야 하지만 보복이 무서워 포기한 탓이다. A씨는 첫 조사에서 경찰 담당자가 "쌍방폭행인데 남자친구랑 화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할 때부터 처벌 의지가 꺾였다고 호소했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웠던 A씨는 긴급상담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하지만 쉽터 머무는 기간은 가장 한 달이고 경제 여유가 없는 A씨는 이사할 수 없는 처지다. 그는 폭력과 스토킹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매일 8건 이상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이지만,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은 요원하다.

교제폭력은 자칫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연인관계 폭력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만 처벌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교제폭력의 개념이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폭행, 성폭행, 폭언, 협박 등은 물론이고 일상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채무변제 요구 등 경제적 요소까지

광주·전남 매일 8건 이상 신고
현행법상 단순 폭행·협박 치부
피해자 지원·가해자 처벌 요원
강제분리 등 담은 법안 8년째 표류
법률에 구체적 정의돼야 예방 가능

다양한 범행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법률적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연인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족쇄 때문에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교제폭력은 혼인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만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스토킹범죄처벌법 적용도 어렵다.

결국 교제폭력 피해자는 퇴거, 격리, 접근금지 조치, 유치장에 구금 등 잠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대다수 교제폭력 사건은 일반 폭행사건으로 포함돼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제폭력 피해자는 처벌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연인을 신고한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자세히 알고 있어 보복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이 이유다.

'연인 사이에서 싸우다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사회통념도 신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경찰에

의해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의 경우 그 정도와 관계없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심각한 물리적 피해가 보이지 않는다면 현장 종결처리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에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제폭력 특성상 폭행의 강도가 점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제폭력을 막기 위한 법은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는 등 최근 8년간 8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연인 관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인권상담소장은 "가정폭력의 끝은 살인이라고 말하는데, 교제폭력도 마찬가지다. 교제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밖에 없는 데 피해자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사회적 제도적 보호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의원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4일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보고서를 통해 "교제 상대방을 통제하는 행위를 포함한 교제폭력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의돼야 학대, 살해 등의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에 6만 3000여 명 넘게 서명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폐건전자 분류해요 최근 리튬전지 화재 사고로 인해 폐건전자 분리 배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광주시 북구 직원들이 월출동의 재활용선별장에서 수거된 건전지를 분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 패소에 '시끌'

광주지법 "피고 JX금융, 옛 일본광업과 동일 회사 아니다" 이례적 기각
법조계 "피고 부정 안해 원고 입증 의무 없어" 반발...시민모임 항소키로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주장을 전국 법원이 인용해온 것과 달리 처음으로 기각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이 일본 기업 JX 금융(옛 일본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족들은 옛 일본광업 주식회사가 일제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일본으로 데려가 노역을 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해 1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9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망인들인 A씨와 B씨를 일

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한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JX금융이 옛 일본광업과 동일한 회사가 아니며 원고들과 피해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부장판사는 "이력(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JX 금융은 1929년에 설립된 일본광업이 아니라, 2002년에 설립된 회사"라며 "일본광업의 행위에 대해 (JX 금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과 기록된 피해자들의 생일·강제노역 대상 지역 등이 달라 명부상 창씨개명명 이름의 인물과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피해자는 퇴소 시 9000원을 받았다는 기록등을 보면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동일성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측이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또 과거사 진상규명 결정이 법원에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망인이 된 경우 결정문을 배척할 필요까지는 보이지 않지 않지 않다. 지역 한 변호사는 "강제노역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임금 지급여부가 판사의 근거로 들어간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국연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원고들의 창씨개명 이름을 보면 성만 바꾸고 이름은 한 자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노역장소가 다른 것은 당시 도주의 우려 때문에 일제가 알려주지 않거나 망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졌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항소를 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월단체, 계엄군 지휘관 2명 추가 고발

집단발포 자행 최용 여단장 등

5·18기념재단 등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지시하거나 자행한 계엄군 지휘관 2명을 추가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법단체(5·18민주공화국 유족회·공로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 오월 관계자들은 26일 최용 11공수여단장과 11공수여단 61대대장을 집단살해, 살인, 내란중요인무중사·내란부화수행(같이 행동함)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계엄군 지휘관으로서 광주에 투입돼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던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해 3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에는 최용씨가 광주 상무대 전투교육사령부에 머물면서 소속 대대장들에게 집단발포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기재됐다. 61대대장은 집단발포 당시 도청 앞에 배치된 공수부대 4개 대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

오월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을 추진했다. 지난 12일 진상조사위가 정호용 등 계엄군 14명을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는 별건이다. 오월 단체들은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사건 관련자들이 누락했다는 점에서 추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중 현장지휘관에 대한 처벌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청 앞 집단발포를 자행한 11공수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중 생존해 있는 이는 피고발인 두 명뿐이며, 이들에게 집단 학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